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IoT) 인큐베이션센터 통합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04
----------	------

제출년월일 : 2016년 4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의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 개발자,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구현 및 제품화를 지원하고, 사물인터넷 관련 우수제품 개발, 기술사업화, 국내 및 글로벌 시장진출 등 기업 인큐베이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울 내 사물인터넷 특화 자생적 생태계를 제공하고자 함
- 나. 사물인터넷 분야와 창업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기술 및 노하우 등을 갖추고 있는 관련 전문기관에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72 서울시창업지원센터 4층
- 시설규모 : 1,018.96 m^2 (전용면적 468.72 m^2)
- 시설용도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사업화 지원 및 기업육성

- 공간구성 : 장비실(테크샵), 프로젝트 공간, 네트워크 공간 등
- 주요장비 :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CNC조각기 등

※ 전문가 자문 및 유사 시설 사례조사 등을 통해 도입장비 검토 확정 예정

나. 위탁사항

- 위탁기간 : 3년('16.6월~'19.5월)
- 위탁협약 : 수의협약
- 대상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 사업비 : 1,495,000천원('16년 기준)
- 위탁내용

- 사물인터넷(IoT) 인큐베이션센터 시설 관리·운영(운영준비 포함)

- ▶ 센터 운영관련 전문인력 발굴 및 채용 업무
- ▶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자 관리(편의제공, 입주 및 퇴거관리 등) 업무
- ▶ 센터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 ▶ 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한 추가인프라 구축에 관한 업무
- ▶ 시설 및 장비와 비품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 ▶ 공공요금 및 제세, 관리비 등 관리업무 등

- 사물인터넷(IoT)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 ▶ IoT 관련 원스톱 지원 프로그램 개발
(아이디어 및 서비스 발굴, 전문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
- ▶ 센터내 테크샵(창의공작소)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 ▶ 서비스화 아이디어의 실증지원 및 기술평가
- ▶ 스타트업, 개발자, 예비창업자 대상 네트워킹 지원, 창업관련 교육 운영
- ▶ 자문위원회 운영, 투자유치,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사업 발굴, 글로벌 연계 등 시장 진출 지원 등

○ 민간위탁 필요성

-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운영은 임대, 관리 등 일반적인 시설관리 차원이 아닌 테크샵 등 전문적인 시설장비의 운영·관리는 물론 스타트업 육성, 창업지원 및 멘토링 등 전문적인 창업지원 능력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직영으로 운영 시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가 어렵고 순환전보로 인한 노하우 축적이 곤란함
- 따라서, 시설관리 전문성과 스타트업 육성 및 창업지원 노하우를 살리면서, 시(市) 조직의 추가 확보가 필요 없는 위탁관리 방안이 바람직함
-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해, 시(市)는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의 정책방향 결정 및 실증지역 확산,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인 분야에 집중하고, 위탁기관은 아이디어 및 서비스 발굴, 서비스화·사업화 지원, 기업육성 등 전문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사업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략산업의 선정·육성 및 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사업비 1,495백만원 확보(※민간위탁금으로 전용 조치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팀 김기현 (☎2133-2920)